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9.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6. 강동오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4. 8. 19.

다. 상정일자: 제270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9.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강동오 의원】

가. 제안이유

마포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함께 지정벽보판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지정벽보판의 위탁과 관련한 근거가 미비하고,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게시대의 경우 공공 운영(무료)에 따라 수익성 저조 및 소상공인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오다 현재 일부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위탁 대상에 지정벽보판을 추가하고, 수탁자 선정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게시율 증대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선정 방식을 조례에 규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탁 대상에 지정벽보판 추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수탁자 선정 방법 규정(안 제17조)

다. 참고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 입법예고 : 2024. 7. 29. ~ 8. 5.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강동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위탁 대상에 지정벽보판을 추가하고, 수탁자 선정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게시율 증대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선정 방식을 조례에 규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적합성·타당성

-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정벽보판의 운영과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포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현황

- 위탁업체: ㈜한성디자인기획
- 위탁기간: 2024. 2. 1. ~ 2025. 1. 31.
- 위탁대상: 연립형 18개소, 108면 / 저단형 73개소, 153면(상업용 30면)
- 게시수수료(1회/15일 기준)

구분	연립형게시대			저단형게시대		
	광고대행료	도로점용료	수수료	광고대행료	도로점용료	수수료
상업용	93,600	26,400	10,000	63,600	26,400	10,000
공공용		-	-	-	-	-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7조) 위탁 대상에 지정벽보판 추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수탁자 선정 방법을 규정하여 신설하는 내용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정벽보판을 위탁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간수탁자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더욱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수탁자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및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거리 무단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근절되도록 지정게시대를 충분히 활용하고 소관 부서는 불법현수막 단속과 홍보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

[별표 1]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 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 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 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5.] (일부개정) 2024. 7. 15. 조례 제09313호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나.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다.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곳

2. 규격은 가로 6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여야 하며,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만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단서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할 수 없다.
3.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시신청이 게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